

가 10년 이상 살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데 移徙를 갈 수도 없고, 버스까지 갈아타는 것을 따지면 네 번은 같아 타야 돼요. 梧柳洞驛까지 2km 이상을 버스를 타야 되고 또 地下鐵도 세 번인가 같아 타야 되고, 그러다 보면 2時間半도 걸리고 뭐 대중없이 걸리는데 거리에서 하루에 한 5시간을 소모해 버리면 그 사람이 집에 와서도 피곤해서 어떻게 休息도 못하고 새벽부터 떠나서 거리에서 5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問題點이 있어서 그 부인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請願書를 저한테 갖다 줬어요. 사실상 下位職 公務員들에 대해서 薄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九老區에 있던 사람이면 永登浦라든지, 江西라든지, 陽川이라든지, 뭐 銅雀區라든지, 冠岳이라든지 이렇게 인근 区도 많은데 어떻게 돼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江東까지 그렇게해서 보내느냐, 이런 抗議가 있습니다. 그래서…….

○內務局長 尹斗榮 언제 發令이 그곳으로 났습니까?

○權會榮委員 11月 5일에.

○內務局長 尹斗榮 작년요. 稅務職입니까?

○權會榮委員 農林職이에요.

○內務局長 尹斗榮 農林職이에요. 그러면 저희 人事苦衷制度라는 것이 있습니다. 苦衷相談制度라는 것이 있는데 人事課에 그 職員이 가면 苦衷相談窓口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런 隘路가 있으니까 다음 人事時期에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相談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꼭 九老는 안 되더라도, 그 請願이 들어 왔으면 그것을 저를 주시지요.

○權會榮委員 네.

○委員長 朴禧柱 더 質疑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内務局所管 業務에 대한 質疑答辯을 終結하고, 内務局所管 懸案主要業務報告의 件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内務局長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委员 여러분 그리고 内務局長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4月 14

日 金曜日 15時에는 監查官所管 懸案主要業務에 대하여 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05分 散會)

#### ○出席委員

|       |       |       |
|-------|-------|-------|
| 朴 禧 柱 | 韓 仁 洙 | 白 中 元 |
| 李 永 和 | 朴 尚 東 | 權 寧 斌 |
| 權 會 榮 | 姜 晶 錫 | 金 鍾 雄 |
| 文 一 權 |       |       |

#### ○專門委員

鄭 文 孝

#### ○出席公務員

|      |       |
|------|-------|
| 內務局長 | 尹 斗 榮 |
|      | 書面答辯  |

#### [内務局]

#### ○金鍾雄委員

(質疑要旨)

한자리에 고정적으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체육지도사를 생활체육과 진흥계장 뿐만 아니라 관리·시설계장에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지도사의 사기를 전작케 할 용의는?

(答 辯)

○우리시에서는 체육지도사 48명(본청 3, 자치구 45)이 별정직 7급상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법규상 승진·전보·전직·강임 등의 제도가 없으며 보수 지급 기준으로 일반직 몇급 “상당계급”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리계장 및 시설계장의 별정직 임용문제는 관리계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를, 시설계의 경우 여가생활 및 체육공원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각각 주된업무로 하 고 있어 업무성격상 별정직공무원보다는 일반직공무원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
|--|
| <p>○ 참고로 현재 시 본청 및 자치구에서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하여 사회진흥과로 개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p> <p>○ 權寧斌委員<br/>(質疑要旨)</p> <p>구·동의 하위직 공무원을 차량 10부제 단속 및 과정차량 단속등에 동원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민원인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p> <p>이러한 단속행위와 과태료스티커 발부의 법적근거, 단속요원의 근무현황 및 사기진작대책은?</p> <p>(答 辯)</p> <p>1. 단속대상</p> <p>○ 구청에서 교통관련 단속업무는 10부제, 버스전용차선, 불법주정차 과정차량 단속 업무등임</p> <p>○ 10부제 위반차량 단속근거는 자동차관리법, 버스전용차선 및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과정차량 단속은 도로법에 근거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부제 : 5만원 과태료</li> <li>- 불법주정차 : 4~5만원 과태료</li> <li>- 전용차선 : 위반차량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적발 통보</li> <li>- 과정차량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li> </ul> <p>2. 단속요원 현황</p> <p>○ 10부제 - 일 4,000여명 동원<br/>(구동직원 1,500명, 단속원 1,447명, 경찰 800여명)</p> <p>○ 전용차선 - 1,447명(기능직)</p> <p>○ 과정차량 - 468명(기능직 351명, 경찰 117명)</p> <p>○ 불법주정차 - 주차단속원 488명, 공익근무요원 240명</p> <p>3. 근무실태</p> <p>○ 10부제 단속시 동원되는 구·동 직원 1,500명을 제외하고는 단속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음</p> <p>○ 구·동 공무원의 경우도 07:00에서 출근시간 전까지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 불편을 야기시키는 사례는 없음</p> <p>4. 사기진작대책</p> <p>○ 단속원들에게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p> <p>○ 제반 단속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교통지도 직 신설 추진중</p> <p>○ 주차단속원 증원 및 공익근무요원 추가 확보로 구·동 공무원 동원 점차적 지양</p> |
|--|